

# 한국폐기물협회 회비기준

(협회 회비규정 제6조(회비))

(2025.12.23. 일부개정)

## □ [별표1] 입회비

회원	구분	입회비(원)	비고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500,000	
	시·군·구	300,000	
기관회원	정부 산하기관	500,000	
	지자체 산하기관	300,000	
단체회원	협회, 조합, 단체	500,000	
	학회	300,000	
기업회원	매출 천억이상	1,000,000	
	매출 천억미만	500,000	

## □ [별표2] 연회비

회원	구분	연회비(원)		비고
지방자치단체	특별시, 광역시	20,000,000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10,000,000		
	사군구	4,000,000		
기관회원	정부 산하기관	20,000,000		
	광역지자체 산하기관	10,000,000		
	기초지자체 산하기관	4,000,000		
단체회원	협회, 조합, 단체	<b>전년도 연간 예산</b>	<b>연회비(원)</b>	이사의 경우 연회비로 100만원 별도 납부
		5억원 미만	2,000,000	
		5억~20억 미만	4,000,000	
		20억~100억 미만	6,000,000	
		100억~500억 미만	10,000,000	
		500억~1,000억 미만	20,000,000	
		1,000억 이상	50,000,000	
	학회	1,000,000		이사의 경우 연회비로 50만원 별도 납부
기업회원	매출 천억이상	4,000,000		이사의 경우 연회비로 200만원 별도 납부
	매출 천억미만	2,000,000		이사의 경우 연회비로 100만원 별도 납부